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안산시장이 2017년 3월 30일 제출하여 4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상위법과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대지급금을 미상환하면 수급권을 정지하는 규정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과도한 규제 조항으로 개정

2. 주요내용

- 「의료급여법」에 없는 과도한 규제조항 정비 (제7조제3항)
※ 대지급금의 미 상환시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제조항 삭제
- 상위법에 맞게 용어의 정비 : 대불금 → 대지급금
- 일부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주요검토사항

가.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일 이상 입법예고(2017. 1.11 ~ 1. 31)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시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2017. 2. 17 개최된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는 등 입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음

나.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는

-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대지급금을 미상환하면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 상위법에 맞는 용어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정비하고
-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임

4. 종합검토의견

-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참고 자료 2에서 보듯이 안산시 대상자 17,462명을 위해 지불되는 의료비 732억원중 국도비가 84% 지원되는 사업으로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5. 참고자료 : 1. 관계법령 1부

2.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및 지원내역
3. 2017년 안산시 예산중 사회복지분야 비중 “끝”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서

본 조례안은 안산시장이 2017년 3월 30일 제출하여 4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2016. 8.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항 중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이 “5년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 됨에 따라
-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위탁계약 기간을 개정

2. 주요내용

- 제6조 위탁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재계약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

3. 주요 검토사항

가.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일 이상 입법예고(2016.12. 28~2017. 1. 16)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시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2017. 1. 26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는 등 입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음

나.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는

-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을
-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이 5년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시 조례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 전 체결된 민간위탁 계약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고 하여 기존에 위탁을 받은자가 위탁 운영기간을 3년이 아닌 5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음

다. 민간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 노인전문요양 시설은 현재 위탁받은 법인의 위탁 만료일이 2017. 8. 31으로서 3년이 경과되어 위탁이 만료되므로
- 이 시점부터 운영할 위탁자를 위탁여부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5년을 기간으로 선정여야 할 것임

4. 종합검토의견

-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덧붙임 : 1. 관계법령 1부

2.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현황 1부 “끝”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은 안산시장이 2017년 3월 30일 제출하여 4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2017년 9월 30일자로 안산대학교에 위탁된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 운영을 맡을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 대상시설

- 시설명 :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소재지 :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일동, 안산대학교 채플관)
- 종사자 : 12명*
 - * 센터장 1명, 보육전문요원 4명(아이러브맘카페 보육전문요원 1명 포함), 영양사 1명, 대체교사 관리자 2명, 보육컨설턴트 1명,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요원 3명

나. 위탁운영 계획

- 위탁기간 : 2017. 10. 01. ~ 2020. 09. 30
- ※ 위탁기간은 3년 단, 안산시 영유아보육조례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 가능(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함)

- 운영방법 : 공개모집 (신규위탁)
- 운영예산 : 692,000천원
- 주요사업
 - 지역의 보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영유아 보호자와에 대한 양육정보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
 - 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 지역 전문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3. 주요검토사항

가. 운영상황

-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1994년 보육정보센터로 설립되어 명회원에서 위탁 운영한 이래 1997년 새빛학원에 위탁된 이후 시립원초어린이집,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사무실을 두고 위탁사업을 수행하다가 2010년 안산대학교 채플관으로 이전하였고 2013년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른
- 2016년 운영상황을 보면 보육컨설팅 364회 보육 교직원 교육지원 5,958명 등 우리시 보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이 사업과 같이 수탁자가 사무실을 제공하는 사례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²⁾와 안산 여성인력개발센터³⁾, 다문화가족지원센터⁴⁾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⁵⁾ 등이 있음

2) (온유한교회 시설제공)

3) (YWCA위탁 –운영비에 임대료 포함/ 년간10억)

4) (과거YWCA에서 사무공간 마련)

5) 신안산대학교

나. 예산수반검토사항

- 23년간 지속되어온 사업이고 금년도 본예산에 보육 인프라 기반 구축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6억 9200만원 편성되었음

다. 법령검토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시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고 같은법 51조에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6조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4. 검토의견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육아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보육사업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가 되고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오랫동안 민간에 위탁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전문성과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한 대처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은 안산시장이 2017년 3월 30일 제출하여 4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계승하며,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 :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 구성 : 의병관련 지방자치단체 (37개 시·군·구)
- 주요사업
 -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의병선양 사업 발굴 추진
 -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 청년의병 및 청소년의병 조직 구성을 통한 범국민운동 전개
 - 의병관련 국가 정책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
 - 현안사업 등에 대한 공동해결 방안 모색
 - 의병사례연구 및 국내외 현장탐방
 -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협의회 임원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간사 1명
- 회비 : 일반 연회비 (1백만원), 특별회비(필요에 따라 별도 정함)

3. 검토내용

○ 규약(안)

- 의병에 관심이 있는 기초지자체로 구성되며 연 회비는 1백만원으로 규정 불임 # 1과 같음
- 다른 행정협의회와 운영 규정과 비교하여

○ 안산시 가입 광역행정협의회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 10개 광역행정협의회에 가입¹⁾하고 있으며 협의회별로 년 1회 ~ 6회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 성과는 협의회에 따라 편차가 있음

연번	협의회명	구성기관	회장 도시	개최 시기	구성 시기	예산액 (천원)
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개 기관)	강릉시	년6회	2000.04.26.	400만
2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시장·군수 (31개 기관)	시흥시	분기1회	1996.06.28	1,000만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 남양주 (15개 기관)	고양시	분기1회	2003.04.03	-
4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안산, 시흥, 화성, 김포, 평택 (5개 기관)	안산시	반기1회	2009.10.25	300만
5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7개 기관)	광명시	년6회	1981.08.28	-
6	시화호권정책협의회	안산·시흥·화성·K-water (4개 기관)	순번	분기1회	2013.05.21	-
7	안산·시흥정책협의회	안산, 시흥 (2개 기관)	없음	반기1회	2010.09.14	-
8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서울성북, 노원, 서대문, 금천, 강동구, 인천동, 남, 부평, 계양구, 광주광산구, 대전서, 유성구, 경기수원, 안양, 부천, 광명, 안산, 오산, 시흥, 김포, 광주, 양평, 충남논산, 전북완주 24개	시흥시	반기1회	2016.01.22	1,000만
9	생명안전도시생활협의회	안산, 시흥 (2개 기관)	없음	수시	2014.09.25	-
1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전국 이주민이 많은 도시로 구성 (24개 도시)	시흥시	년1회	2012.11.7	360만

1) 4,8,10은 의결과 고시, 2는 제238회 임시회에 동의안 제출, 3은 제239회 동의안 제출 예정

4. 검토의견

- 의병도시 협의회를 구성하고 참여하는 것은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고 참여 도시간 다방면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은 있으나
- 행정협의회는 구성보다는 운영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도움이 되는 협의 안건들이 처리되어야 함에도 동 행정협의회는 공동의 관심과 이해로 추진할 사업이 제한적일 것은 우려되므로 가입과 동시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공동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동 행정협의회는 지자체간 협의를 통하여 2015년 설립을 하여 회비도 2회 납부한 사안으로 금번 회기에 지방자치법 제 152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은 안산시장이 2017년 3월 30일 제출하여 4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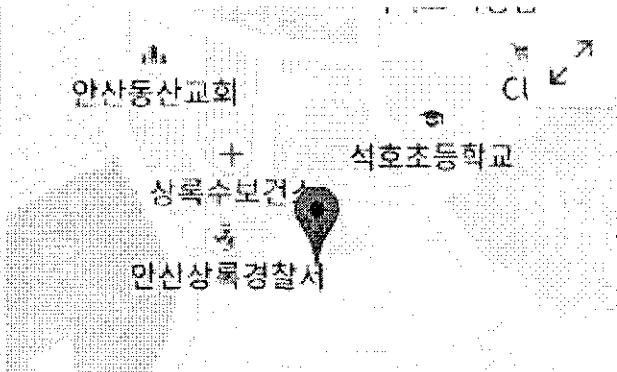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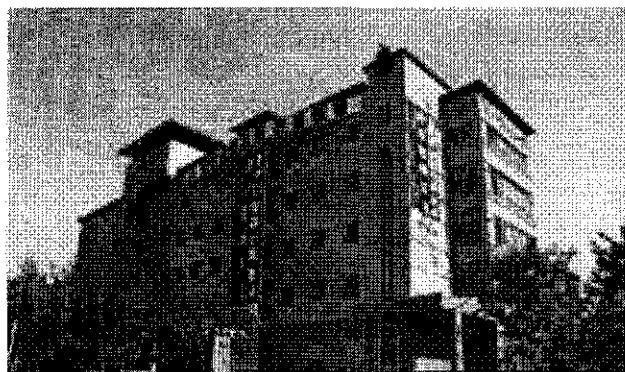
- 우리시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립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현황

-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6 (사동)
- 설치일 : 2005. 9. 12.
- 수용인원 : 106명 (입소자 82명, 주간보호 24명 포함)
- 직원현황 : 58명 (요양원 52명, 주간보호 6명 포함)
- 시설규모 : 건축면적 1,212.64m² / 연면적 3,495.22m² (지상 3층, 지하 1층)

구분	시설 현황
지하1층	세탁실,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지상1층	원장실, 사무실, 상담실, 자원봉사자실, 강당, 직원식당, 주방, 로비카페, 도서공간, 부설 백석노인주야간보호센터
지상2층	생활실(2인실-7개/4인실-7개), 요양보호사실, 간호데스크, 간호사실, 목욕실, 물품보관실, 프로그램실, 특별침실, 사랑마루(배회로)
지상3층	생활실(2인실-6개/4인실-7개), 요양보호사실, 간호데스크, 간호사실, 목욕실, 린넨실, 물리치료실, 사랑마루(배회로)



나. 위탁운영 계획

- 시설명 :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6 (사동)
- 위탁기간 : 2017. 9. 1. ~ 2022. 8. 31.(5년)
 - ※ 최초위탁 : 2005. 9. 1.
- 위탁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 시설규모 : 연면적 3,495.22m²(지상3층/지하1층)
- 위탁사무 :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및 관련 사무 일체
- 운영인력 및 예산 : 58명, 민간위탁금 없음
 -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특성상 운영비 재원 “장기요양보험급여”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수령하여 운영 됨.

3. 주요 검토사항

가. 운영상황

- 안산시 시립노인 전문요양원은 2005. 9. 12 개원 시기부터民間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음
 - 위탁자 : 안산제일복지재단
 - 2005.9.1. : 최초위탁
 - 2008.9.1. : 재 위탁
 - 2011.9.1. : 공개모집 위탁
 - 2014.9.1. : 재 위탁
- 최근위탁은 2014. 9. 1부터 3년의 기간으로 2017, 8. 31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5년의 기간으로 2017. 9. 1부터 위탁을 추진할 계획임

나. 예산수반사항

-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입소자 지원금으로 133,853천원이 지원
- 운영비는 건강보험공단 지원과 입소자 자부담으로 충당됨

다. 법령 검토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의 2 시설의 위탁 규정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되어 금번 237차 임시회의에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6조제2항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부칙 제2조에도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 전 체결된 민간위탁 계약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고 하여 기존 수탁자가 위탁 운영기간을 3년이 아닌 5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음

4. 검토의견

- 안산시립 노인전문요양원은 치매 및 노인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설립되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민간법인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음
- 급속한 노령인구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문성 있는 시설 운영과 우수 서비스 사례 발굴 및 전파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은 안산시장이 2017년 3월 30일 제출하여 4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우리시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2. 주요내용

가.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 시설 현황

-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고잔로 162 (성포동)
- 설치일 : 2002. 9. 1.
- 1일 이용인원 : 800명
- 직원현황 : 38명 (복지관 13명, 요양업무 21명, 상담센터 1명, 경로식당 3명)
- 시설규모 : 건축면적 1,792.6m² (본관—992m², 신관—586.6m², 분관 213.76m²)

구분	시설 현황		
	본관	신관	일동분관
지하1층	장기요양사무실, 탁구실	-	-
지상1층	안내실, 이·미용실, 컴퓨터 교육실, 기능회복실	경로식당	-
지상2층	사무실, 평생교육실, 노인 상담센터	사무실	사무실, 교육실
지상3층	대회의실, 실버악단실	노인대학실	-
지상4층	-	옥탑, 물탱크실, 기계실	-



나. 위탁운영 계획

- 시설명 :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고잔로 162 (성포동)
- 위탁기간 : 2017. 9. 1. ~ 2022. 8. 31.(5년)
 - ※ 최초위탁 : 1997. 10. 4.
- 위탁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 시설규모 : 건축면적 1,792.6m² (본관-992m², 신관-586.6m², 분관 213.76m²)
- 위탁사무 :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련 사무 일체
- 운영인력 및 예산 : 13명, 761,135천원

3. 주요 검토사항

가. 운영상황

- 「상록구노인복지관」의 규모는 지상4층 지하1층으로 건축면적 1,792m²로 상록구 어르신들의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으로써
- '1997. 10. 4 최초로 위탁되어 20년간 민간에 위탁되어 온 사업으로 금번에 5년의 기간으로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음.

나. 예산수반사항 검토

- 2017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 761,135천원이 예산 편성되었음

다. 법령 검토사항

- 2017. 1. 7 개최된 제236차 안산시 임시회에서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고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재계약은 1회에 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금회 위탁여부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신규 위탁자를 결정하면 최대 10년 동안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4. 검토의견

- 상록구 어르신들의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록구 노인복지관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급속하게 진행되는 노령화 시대에 양질의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관 사업을 민간에 위탁을 하여 추진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본 의안은 안산시장이 2017년 3월 30일 제출하여 4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안산향교 복원 토지 매입안은

- 안산향교는 1569년 건립 이후 1944년 과천향교로 통·폐합될 때까지 오랜 기간 안산의 교육 기관이었으나, 현재 향교 터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 안산향교 복원은 역사도시 안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향교 진입로 및 향교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을 하고자 함

○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매입 변경안은

-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토지규제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재 보호 및 종합정비를 통한 복합문화단지 를 조성하여 역사교육장 및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2015년 12월 승인받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공유재산 관리계획<제 22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의 변경(안)임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 계획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안은

- 신길동 지역의 생활권 인구는 198,816명(주민 55,315명, 반월공단 근로자 143,501명)으로 안산시 인구의 27.7%를 차지하고 있으나 안산시 중심가에서 8km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주변에는 보건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이 없음
- 이에 유휴 시유지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복지시설 등 지속적인 시설 요구에 따라 2017. 7월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 주민 접근성 확보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건강 생활을 개선하고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사동 제3토취장과 한양대부지 교환안은

- 우리시는 산·학·연·관의 긴밀한 연계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2003년 한양대 부지를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우선 제공하고 향후 안산시 부지와 교환하기로 하는 협약을 한양대와 체결(2003.7.30.)한 바 있으며,
- 이후 한양대가 제공한 부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험·연구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을 유치하였음.
- 이는 현재 200여개의 중소·벤처기업과 2,000여명의 석·박사급 인력이 활동하는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혁신 클러스터인 ‘안산사이언스밸리’ 구축의 밀거름이 되었으며,
- 금회 사동 제3토취장 부지와 한양대 부지(경기TP 등 3개 기관부지)를 협약 내용에 따라 교환하여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세계적인 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예정가액)	취 득 시 기	취득사유 및 방법	취득대상 소 유 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면적)					
		계	10	31,043,722				
1	토지	수암동 351	1	1,581,000	2017	안산향교복원 토지매입	안산시	2017 1차수시분
2	토지	선감동 681-46	1	5,456,891 7,877,712	당초 변경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매입 변경	안산시 (문화예 술파)	2017 1차수시분
3	건물	신길동 1384-11	1	2,737,600	2018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안산시 (단원보 전소)	2017 1차수시분

나. 교환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교환대 상수량	추정가액 (예정가격)	교환 시기	교환 사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구 분	지 목	소 재 지	일단위 수 량						
1	처 분 취 득	토지 토지	사동 산 191와 31필지 사동 1271-11와 2필지		32 3	129,882,840 129,381,019		사동 제3토취장과 한양대부지 교환	한양대 안산시	
			이 하 여 백							

다. 처분대상 재산목록 : 해당없음.

3. 주요 검토사항

가. 법령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예산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변경할 때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7년 제1차 변경 계획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는 취득 및 처분의 대상을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기준가격의 30% 이상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2(교환하는 행정 재산의 종류. 가격 등) 제2항에 의하면 교환하는 재산중 한쪽의 가격이 4분의 3미만이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동 제 3토취장과 한양대 부지교환은 이 조건에 위배되지 않음

나. 필요성

- 안산향교는 향교터는 재단법인 경기도향교재단(관리권자 과천향교)에서 소유하고 있으나 진입을 위한 매입대상 부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 이 부지를 매입해야 향교를 복원할 수 있으므로 매입이 필요함
-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매입 변경안은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동의 받았으나 매입 과정에서 실거래가격이 반영되어 취득예정 금액이 54억 5689만원에서 78억 7771만원으로 44% 증가하여 변경계획을 의결 받아야 함

-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안은 신길동 지역에 건강생활 지원시설이 없어 인근의 주민과 반월.시화공단의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국비로 34%인 9억 1850만원을 지원 받아 예산 부담도 경감됨
- 사동 제3토취장과 한양대부지교환은 2003. 7. 30년 부지교환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교환대상 부지에 경기테크노파크를 비롯하여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3개 기관이 현재 입주하였고 연간 4억 원의 임대료 (시 지원 2억 원)를 지불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며
 - * 안산시로 커속하게 되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기테크노파크에 무상 임대 예정

200여개의 중소·벤처기업과 2,000여명의 석·박사급 인력이 활동하는 과학기술혁신 클러스터인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부지교환이 필요함

4. 검토의견

가. 안산향교 복원 토지매입 건은

- 향교를 복원하여 시민들의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향교부지 소유권자인 재단법인 경기도향교재단(관리권자 과천향교)과 원만히 협의하여 향교 건립 및 운영에 대한 대안은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2. 14일 안산시의회 소관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해 사전 보고된 사항임.

나.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매입 변경안은

-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외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거점 시설에 적합하고 경기도기념물 제194호로 보호조치가 필요하여 조속히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통하여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당초 54억여원으로 추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의 받고 금번 회기에 변경안을 제출했음에도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27억원, 금년 1회 추경에 70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정확한 추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안은

- 신길동은 시 외곽지역으로 건강증진 관련 시설이 없고 산업단지 인근 지역이므로
-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인근주민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라. 사동 제3토취장과 한양대부지 교환

- 우리시는 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 지역경제의 많은 부분이 산업단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에 의한 구조고도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 경기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이 역할을 안정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한양대와 부지를 교환하는 것이 필요함